

산업재해예방설비 투자계획서

□ 제조·서비스업(사고사망 등 고위험 개선사업 포함)

[단위: 대(식), 천원]

투자 설비명	모델/규격 (차대번호)	수량	소요 금액	자금지원 신청금액			자체 부담금	투자완료 예정일
	견적업체	단가		계	보조금	융자금		
계	-	-						-

- 주1) “클린사업장 조성사업”에 참여한 사업장은 기술지원(점검.감독) 및 투자계획수립 컨설팅 내용 전체에 대하여 자금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투자설비에 대한 자체부담금(예상금액)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
- 주2) 투자설비가 “유해.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”인 경우에는 투자완료예정일을 자금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여야 함

□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

[단위: 대(식), 천원]

투자 설비명	모델/규격	수량	소요 금액	보조금 신청금액	자체 부담금	투자완료 예정일
	견적업체	단가				
계						-

- 주1) “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” 자금지원 신청설비에 대한 자체부담금(예상금액)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

□ 첨부서류

서 류 명	클린사업장 조성사업 (사고사망 등 고위험 개선사업)		추락방지용 안전시설	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	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
	온라인 (전산)	오프라인 (직접)			
① 견적서(원본) -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: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	○	○	○	○	○
② 상품설명서(카다록) 또는 외관도면 설계근거 자료 등 - 건설업 :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-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: 배치도, 평면도, 입면도	○	○	○	○	○
③ 지원금액 결정 근거자료 - 전문가격조사기관 자료 실거래금액 자료 수입명장 등 - 제조 또는 공사원가계산서(정부공인자격기준)	○	○	×	○	○
④ 산단형 산재예방시설 운영계획서 ※ 산단형 산재예방시설 설치·운영 방안 매칭비용 부담방안 전문인력 배치 및 연간 운영계획 관리비 및 인건비 조달 방안 등	×	×	×	○	×
⑤ 설치장소 보유 서류(자가 : 등기부 등본, 임차 : 임대차 계약서)	×	×	×	○	×
⑥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(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)	○	○	○	○	○
⑦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(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)	○	○	×	×	○

- 주) 첨부서류 ⑥ 안전보건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간 산재보험료 체납 확인시스템이 구축되어 체납여부 확인가능 시 제외

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

목적

-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“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”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·조회 및 활용
-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, 지원효과 분석,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·관세청·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·활용

수집·조회 및 활용 정보

- (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)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, 납입자본금, 자산총액, 부채총액, 영업이익, 당기순이익 및 창.휴.폐업일,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,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,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

수집·조회 및 활용 기관

-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(집행기관 포함),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

동의 효력기간

-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

*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·이용

※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,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.

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·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20 년 월 일

기업명

대표자

(인)

※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·조회·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,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.

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

(제16조제2항 및 제39조 관련)

■ 제조·서비스업 등 보조금 지급사업(), 사고사망 등 고위험 개선사업()

1. 우리 공단의 「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」의 **향후 지원 절차**는 다음과 같습니다.

☞ 보조금 지급신청(사업주→공단) ➡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통보(공단) ➡ 시설투자(사업주↔공급업체) ➡ 지급보증보험 증권, 전체 설비·공사대금 지불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및 투자완료확인 요청(사업주→공단) ➡ 투자완료확인(공단) ➡ 보조금 지급(공단→사업주) ➡ 사후 기술지도(공단)

2. 보조금 지급신청자는 '보조금 지급신청 시' 지원받고자 하는 설비에 대한 **가격을 조사하여** 최저·최적 가격을 제시한 공급업체의 견적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, '투자완료 확인요청 시'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3. 보조금 지급대상자는 **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투자완료 확인요청(1개월 1회 연장 가능)을 하지 않은 경우,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및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(근로자 고용 여부 확인)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** 보조금 지급결정이 취소되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.
 ※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에 대하여 결정 통보받은 내용과 동일여부(구매사양, 안전조치기준 등)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**투자완료확인 요청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**

확인자 서명

4. 우리 공단에 보조금 지급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투자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 광역본부장등에게 **사전에 투자계획변경을 요청하여 승인된 후 투자**를 하여야 하며, 임의로 투자계획을 변경하여 투자 시에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.
5.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 중 기존설비에 부착되는 안전보건설비는 사업주가 소유하고 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사용하는 설비(고정 구조물, 천장 크레인 등 이동불가 설비 또는 임대업 제외)에 부착되는 것에 한하며 사업주는 이에 관한 사전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.
6. 보조금을 지급받기 이전이나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사후관리기간(투자완료일로부터 최대5년)이 지나기 이전까지는 ① **사업자등록번호** ② **사업장명** ③ **대표자** ④ **사업장 소재지 또는 기타 변경사항 발생 즉시** 관할 광역본부장등에게 변경승인 요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 ※ 변경승인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 및 환수가 될 수 있습니다.

확인자 서명

7. 「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」으로 투자한 설비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사후관리기간이 지나기 이전까지 **보조금 지급사업의 목적에 반하여 설치장소 또는 설비구조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** 관할 광역본부장등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, 임의매각, 증여 또는 폐기 등 기타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8. 사업주는 보조금 지급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제한될 수 있는지, 해당 설비의 취득으로 인한 신고, 세금 납부 등의 후속조치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투자하여야 하며, 만약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설물 투자가 제한되는 경우 설치물의 강제철거 등 불이익(철거된 경우 보조금 환수)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(특히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(시행규칙 별표 3, 4 포함) 또는 개발제한 등 관련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.)
9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**보조금 지급 취소·환수, 추가 환수금(제재부가금) 납부 및 일정기간 동안 보조금 지급신청이 제한되며,** 관계법령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-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(지급받은 금액의 5배 추가환수금, 신청 제한기간 5년)
- ② 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(신청 제한기간 3년)
- ③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설비를 임의매각, 훼손 또는 분실하거나, 그 밖에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, 관리, 사용하지 않은 경우(지급받은 금액의 2배 추가환수금, 신청 제한기간 3년)
- ④ 보조금을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경우(자부담금 페이백 등)(지급받은 금액의 2배 추가환수금, 신청 제한기간 3년)
- ⑤ 보조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원받은 시설 또는 장비를 국외로 이전 설치한 경우(지급받은 금액의 2배 추가환수금, 신청 제한기간 3년)
- ⑥ 보조금 지급 후 3년 이내에 해당 보조시설 또는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(신청 제한기간 3년)
- ⑦ 공단의 사후 기술지도 시 보완요구 사항을 보완하지 않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사후 기술지도가 불가능한 경우
- ⑧ 그 밖에 필요하다고 광역본부장등이 인정하여 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
 - 공단에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미신고하거나, 제출된 세금계산서와 최종 투자금액이 차이가 발생한 경우 등

확인자 서명

위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 투자 시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.

20 년 월 일

확인자 (대표자)	생년월일 성 명	
		(서명)

(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)

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

(제37조제1항 관련)

■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

1. 우리 공단의 「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」의 **향후 지원절차**는 다음과 같습니다.

☞ 보조금 지급신청(사업주→공단) ➡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통보(공단) ➡ 시설투자(사업주↔공급업체)
 ➡ 지급보증보험 증권, 전체 설비·공사대금 지불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및 투자완료 확인 요청(사업주→공단)
 ➡ 투자완료확인(공단) ➡ 보조금 지급(공단→사업주) ➡ 사후 기술지도(공단)

2. 보조금 지급신청자는 '보조금 지급신청 시' 지원받으자 하는 설비에 대한 **가격을 조사하여** 최저,최적 가격을 제시한 공급업체의 견적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, '투자완료 확인요청 시'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
3. 보조금 지급대상자는 **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투자완료확인 요청(3개월 1회 연장 가능)을 하지 않는 경우,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및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(근로자 고용 여부 확인, 공공기관인 경우 생략)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** 보조금 지급결정이 취소되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.

※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에 대하여 결정 통보받은 내용과 동일여부(구매사양, 안전조치기준 등)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투자완료확인 요청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확인자 서명

4. 우리 공단에 보조금 지급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투자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 광역본부장등에게 **사전**에 투자계획변경을 요청하여 승인된 후 투자를 하여야 하며, 임의로 투자계획을 변경하여 투자 시에는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.

5. 보조금을 지급받기 이전이나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사후관리기간(투자완료일로부터 최대5년)이 지나기 이전까지는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사업장명 ③ 대표자 ④ 사업장 소재지 또는 기타 변경사항 발생 즉시 관할 광역본부장 등에게 변경승인 요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
※ 변경승인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 및 환수가 될 수 있습니다.

확인자 서명

6. 「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」으로 투자한 설비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사후관리기간이 지나기 이전까지는 **보조금 지급사업의 목적에 반하여 설치장소 또는 설비구조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** 관할 광역본부장등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, 임의매각, 증여 또는 폐기 등 기타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
7. 사업주는 보조금 신청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제한될 수 있는지, 해당 설비의 취득으로 인한 신고, 세금 납부 등의 후속조치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투자하여야 하며, 만약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설물 투자가 제한되는 경우 설치물의 강제철거 등 불이익(철거된 경우 보조금 환수)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(특히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(시행규칙 별표 3, 4 포함) 또는 개발제한 등 관련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.)

9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**보조금 지급 취소·환수, 추가 환수금(제재부가금) 납부 및 일정기간 동안 보조금 지급신청이 제한되며,** 관계법령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-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(지급받은 금액의 5배 추가환수금, 신청 제한기간 5년)
 - ② 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(신청 제한기간 3년)
 - ③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설비를 임의매각, 훼손 또는 분실하거나, 그 밖에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, 관리, 사용하지 않은 경우(지급받은 금액의 2배 추가환수금, 신청 제한기간 3년)
 - ④ 보조금을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경우 (자부담금 페이백 등)(지급받은 금액의 2배 추가환수금, 신청 제한기간 3년)
 - ⑤ 보조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원받은 시설 또는 장비를 국외로 이전 설치한 경우(지급받은 금액의 2배 추가환수금, 신청 제한기간 3년)
 - ⑥ 보조금 지급 후 3년 이내에 해당 보조시설 또는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(신청 제한기간 3년)
 - ⑦ 공단의 사후 기술지도 시 보완요구 사항을 보완하지 않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사후 기술지도가 불가능한 경우
 - ⑧ 그 밖에 필요하다고 광역본부장등이 인정하여 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
- 공단에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미신고하거나, 제출된 세금계산서와 최종 투자금액이 차이가 발생한 경우 등

확인자 서명

위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 투자 시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.

20 년 월 일

확인자 (대표자)	생년월일 성 명	(서명)
-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----

(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))

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

(제16조제2항 및 제39조의2제2항 관련)

■ 보조금 신속지원(Quick-Pass)

1. 우리 공단의 「보조금 신속지원(Quick-Pass)」의 향후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
☞ 컨설팅·기술지도 등 현장점검 및 확인서 발급(공단) ➡ 시설개선 및 비용지원(전산) 요청(사업주) ➡ 투자 완료 확인(공단) ➡ 보조금 지급(공단)

2. 보조금 지급신청자는 ① 보조금 지급신청서 ② 실거래 입증서류(전자세금계산서+거래명세서+이체확인증 또는 카드 영수증(법인의 경우 법인카드, 개인의 경우 개인사업자 카드)+거래명세서) ③ 입금회망 통장사본 ④ 보조금지급 예정사업장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를 시설개선 완료 확인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3. 보조금 지급대상자는 재정지원 확인서 내용에 대해 개선기한(최대 4개월) 내로 시설을 개선한 후 공단에 투자완료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, 미요청 시에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.

※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에 대하여 발급받은 확인서 내용과 동일여부(구매사양, 안전조치기준 등)를 반드시 확인하고, 개선비용 신청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확인자 서명

4.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 중 기존설비에 부착되는 안전보건설비는 사업주가 소유하고 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사용하는 설비(고정 구조물, 천장 크레인 등 이동불가 설비 또는 임대업 제외)에 부착되는 것에 한하며, 사업주는 이에 관한 사전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.

5. 사업주는 보조금 지급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제한될 수 있는지, 해당 설비의 취득으로 인한 신고, 세금 납부 등의 후속조치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투자하여야 하며, 만약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설물 투자가 제한되는 경우 설치물의 강제철거 등 불이익(철거된 경우 보조금 환수)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. (특히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(시행규칙 별표 3, 4 포함) 또는 개발제한 등 관련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.)

확인자 서명

6. 공단 투자완료 확인 시, 해당 지원품목이 설치기준 등에 부적절하게 설치된 경우 보완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.

7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·환수, 추가환수금(제재부가금) 납부 및 일정기간 동안 보조금 지급신청이 제한되며, 관계법령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-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(지급받은 금액의 5배 추가환수금, 신청 제한기간 5년)
- ② 보조금을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경우(자부담금 페이백 등)(지급받은 금액의 2배 추가환수금, 신청 제한기간 3년)
- ③ 보조금 지급 후 3년 이내에 해당 보조시설 또는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(신청 제한기간 3년)
- ④ 그 밖에 필요하다고 광역본부장등이 인정하여 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
 - 공단에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미신고하거나, 제출된 세금계산서와 최종 투자금액이 차이가 발생한 경우 등

확인자 서명

위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 투자 시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.

20 년 월 일

확인자 (대표자)	생년월일	
	성 명	(서명)

(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)

클린사업 청렴의무 이행 행동수칙

1. 공단 클린사업 참여에 있어 법과 관련 규정·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한다.
2. 클린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·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도, 받지도 아니한다.
3. 클린사업의 관계자와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식적으로 만나며, 개인적으로 만나 논의하거나 청탁을 하거나 받지 아니한다.
4. 클린사업의 관계자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거나 제공하는 등 부적절한 금전관계를 맺지 아니한다.
5. 혈연 · 학연 · 지연 · 종교 등 연고관계를 이유로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유리하게 하지 아니한다.
6. 클린사업을 이유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유무형의 이익을 요구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.

※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: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안전공단, 감사원, 수사기관,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(부정청탁 시 청탁자와 수행자 모두 처벌, 청탁금지법 제5조 및 제8조)

【클린사업 추진 주의사항】

- ※ 보조금 지급 신청서 작성 시 공급업체와 구매(공사)계약서를 통해 규격, A/S 기간·절차 등에 대해 협의 후 업체 및 모델 선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설비(공사)대금 지급은 공급업체에게 직접(계좌이체 등) 지급하셔야 하며, 해당서류만 실거래 입증서류로 인정됩니다.
 -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에서 게시된 공급업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※ 보조금 지급 결정을 받은 설비가 현장 작업여건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공단에 변경사유를 포함하여 투자계획변경요청을 공문으로 요청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.
 - 변경하고자 하는 제품 가격이 높아진 금액에 대한 차액은 사업장에서 부담하여야 하며, 최초 지원목적과 다른 품목으로 변경은 불가능

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업주 확인서

▶ 본 확인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지급사업과 관련하여,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주가 공급업체로부터 사업주 부담금 및 부가세 일부(또는 전부)를 대납하게 하거나 되돌려 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인하거나 추후에도 하지 않겠음을 확인하는 절차이며, 만약 부정수급 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 통보, 보조금 환수(제재부가금 포함), 사업참여 제한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것을 사업주가 직접 서약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□ 클린사업 보조금을 지급 받음에 있어 공급업체로부터 사업주 부담금 및 부가가치세 일부(또는 전부)를 현금 또는 계좌송금 등의 방법으로 돌려받거나 대납하게 하는 부정수급 행위를 하지 않겠음을 서약하며, 만약 부정수급 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 통보, 보조금 환수(제재부가금 포함), 사업참여제한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겠음을 확인합니다.

※ 클린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(또는 보조금을 지급 받은 사업주)는 투자금액 중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사업주 부담금과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직접 납부하여야함. 만약 이를 공급업체 등을 통해 되돌려 받거나 대납하게 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

관련 법령

[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]

제4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

1.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자

[형법]

제347조(사기)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.

사업장명 :

사업주 성명 :

(서명)

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 선금급 신청서 (제36조제1항 및 제51조제2항 관련)				처리기간 30일
신청인 (사업주)	성명		생년월일(성별)	(남,여)
	주소	(전화번호 :)		
사업장 현황	사업장명		사업장관리번호	
	법인등록번호		사업개시번호	
	주소	(전화번호 :)		
신청설비 설치소재지				
참여 형태	<input type="checkbox"/> 클린사업		<input type="checkbox"/> 추락방지용 안전시설	
	<input type="checkbox"/>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		<input type="checkbox"/>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	
	<input type="checkbox"/>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			
사업기간	착수일자	20	완료일자	20
		※ 공사착공 또는 구매계약일 기재		※ 공사완료 또는 대금결제일 기재
참여구분 및 신청설비			지급 결정액	선금 신청액
<input type="checkbox"/> 클린사업(등 00개 품목)			천원	천원
<input type="checkbox"/> 추락방지용 안전시설(등 00개 품목)			천원	천원
<input type="checkbox"/>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(등 00개 품목)			천원	천원
<input type="checkbox"/>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(등 00개 품목)			천원	천원
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처리 규칙 제36조제1항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금급을 신청합 니다. 불임 : 1. 입금 신청통장 사본 1부 2. 지급보증보험 증권 1부. 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">20</div>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				수수료 없음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○○광역시본부(지역본부·지사)장				

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)

■ 지급받는자(2)

(단위: 천원)

사업장 관리번호		사업장명		공급설비명 (수량)	
사업자 등록번호		대 표 자 (생년월일성별)	()	보조금 지급 결정금액	
소 재 지 (전화번호)	☎ - -				
지급금액	천원	입금은행 계좌번호	(은행)	예금주	

■ 지급받는자(3)

(단위: 천원)

사업장 관리번호		사업장명		공급설비명 (수량)	
사업자 등록번호		대 표 자 (생년월일성별)	()	보조금 지급 결정금액	
소 재 지 (전화번호)	☎ - -				
지급금액	천원	입금은행 계좌번호	(은행)	예금주	

■ 지급받는자(4)

(단위: 천원)

사업장 관리번호		사업장명		공급설비명 (수량)	
사업자 등록번호		대 표 자 (생년월일성별)	()	보조금 지급 결정금액	
소 재 지 (전화번호)	☎ - -				
지급금액	천원	입금은행 계좌번호	(은행)	예금주	

■ 지급받는자(5)

(단위: 천원)

사업장 관리번호		사업장명		공급설비명 (수량)	
사업자 등록번호		대 표 자 (생년월일성별)	()	보조금 지급 결정금액	
소 재 지 (전화번호)	☎ - -				
지급금액	천원	입금은행 계좌번호	(은행)	예금주	

사고사망 고위험작업 대체설비 지원 타당성 검토서

1. 지원품목 :

2. 현재 작업상황 및 작업조건

<input type="checkbox"/>	<p>작업 실태(현황)</p> <p>○</p> <p>-</p> <p>*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height: 150px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50%;"></td> <td style="width: 50%;"></td> </tr> <tr> <td style="width: 50%;"></td> <td style="width: 50%;"></td> </tr> </table>				
<input type="checkbox"/>	<p>작업의 위험성</p> <p>○</p> <p>-</p> <p>*</p>				

3. 검토자 의견 및 지원 사유

<input type="checkbox"/>					
사업장명		검토자	(서명)	검토일자	. . .

『사망사고등 고위험개선 보조지원』 취소 요청서

① 사업장 기본정보

- ▶ 사업장명 :
- ▶ 소재지 :
- ▶ 대표자 :
- ▶ 재정지원번호 :
- ▶ 취소요청 설비 :

② 취소 사유

- 사업 재정적 여건이 충족되지 않음
- 신청한 설비가 사업상 불필요하다고 판단
- 기타 ()

당사는 『사망사고등 고위험개선 보조지원』 사업에 결정된 바 있으나, 위와 같은 사유로 결정된 품목 전체를 자진취소 요청하고자 합니다.

2024 년 월 일

확인자(사업주)

(인 또는 서명)